

사천시의회의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2008-제 호
----------	----------

제출일자 : 2008. 2.

발 의 자:

1. 제안이유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안 반영

나.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다.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의회회의규칙”을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4조제2항의 “비밀을 요하거나”를 “비밀이 필요하거나”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7조 중 “범위내”를 각각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사천시의회의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u></p>	<p>제명 <u>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u></p>
<p>제1조(정의) 이 규정은 <u>사천시의회의회의규칙</u> (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사천시 의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배 부·보존·열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정의) ----- 「<u>사천시의회 회의 규칙</u>」----- ----- ----- -----.</p>
<p>제2조(정의) (생 략)</p> <p>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u>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u>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사천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p> <p>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사천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u>비밀을</u> 요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한 사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별지 제1호서식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p> <p>3. ~ 5.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지방자치법</u>」 제72조제2항----- ----- ----- -----</p> <p>2. ----- -----<u>비밀이 필요</u> <u>하거나</u> ----- -----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시회의록) ① (생 략)</p> <p>②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u>비밀을</u>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p>	<p>제4조(임시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비밀이 필요하거나</u> ----- -----</p>

<p>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u>범위내</u>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 -----.</p> <p>③ ----- ----- <u>범위 내</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별지 제4호 서식)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u>범위내</u>의 것이어야 한다.</p>	<p>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 ----- ----- ----- ----- ----- <u>범위 내</u> ----- -----.</p>
<p>제9조(자구의 정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 사천시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별지 제6호서식)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자구의 정정) ① ----- ----- <u>그 밖의</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내규 등 제정) 회의록의 작성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2조(내규 등 제정) ----- <u>그 밖의</u> -----.</p>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 제72조 (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